

## 2) 소작쟁의의 일반적 추세

소작쟁의는 3·1운동 직후부터 식민지 농촌사회의 ‘항상적 현상’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소작쟁의 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소작쟁의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명·건)

구 분 연 도	식산국 통계		경무국 통계			
			전 국		전 남	
	동원 인원수	쟁의 건수	동원 인원수	쟁의 건수	동원 인원수	쟁의 건수
1920	4,040	15	-	-	-	-
1921	2,967	27	2,967	27	115	4
1922	3,539	24	3,539	24	0	0
1923	9,063	176	9,063	176	1,620	24
1924	6,929	164	6,929	164	2,990	59
1925	4,002	204	2,646	11	1,514	4
1926	2,745	198	2,118	17	16	1
1927	3,973	275	3,285	22	209	5
1928	4,863	1,590	3,572	30	47	3
1929	5,419	423	2,620	36	0	0
1930	13,012	726	10,037	92	867	4
1931	10,282	667	5,486	57	726	6
1932	4,687	305	2,910	51	116	2
1933	10,337	1,975	2,492	66	327	5
1934	22,454	7,544	4,113	106	795	9
1935	59,019	25,834	2,795	71	444	16
1936	72,453	29,975	3,462	56	708	11
1937	-	31,799	2,234	24	82	2
1938	-	22,596	1,338	30	103	3
1939	-	16,452	-	-	-	-

비고: 경무국 통계는 치안상의 필요로 “경찰의 주의를 끌게 된 비교적 대쟁의”를 집계한 것이며, 식산국 통계는 농업정책의 기본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규모 쟁의까지 다 포함하여 집계한 것임.  
출전: 조선총독부 농림국, 『조선농지연보』 제1집, 1940, 8~9·26~27쪽; 조선총독부 경무국, 『최근 조선의 치안상황』, 1938, 97~99쪽.

앞의 표를 근거로 소작쟁의 일반적 추세를 검토할 때 주의할 점은 통계 작성의 기준이 조사 기관과 시기에 따라 달랐다는 사실이다. 특히 1933년 이후 경무국과 식산국의 소작쟁의 집계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전적으로 집계기준의 차이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소작쟁의의 시기별 추이를 설명하는 경우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식산국 통계에 1933년 이후 소작쟁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까닭은 조선소작조정령(1932. 12.)과 조선농지령(1934. 4.) 등으로 분쟁조정사건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전개된 소작쟁의의 시기별 추이와 논의 단위면적당 수확량, 논수익률, 농산물 가격, 농가 호당 경작면적 등의 시기별 추이를 비교하면 양자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성이 없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의 소작쟁의가 경제적 지표의 변화보다는 정치적 변수에 더 크게 영향받았음을 말해준다. 소작쟁의의 시기별 추이를 검토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첫째, 1920년대 전반기에 대규모의 소작쟁의가 많이 발생한 것은 삼남지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소작인조합운동 때문이었다. 즉, 1923~1924년에는 충북 영동, 전남 순천 및 다도해지역, 경남 진주, 황해도 재령 등지에서 소작인조합의 주도로 대규모의 쟁의가 자주 발생하였다.

둘째, 1920년대 후반기에 소작쟁의가 전반적으로 소강상태를 보인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 소작인조합운동이 급격히 퇴조하면서 지역·사회운동의 주요 역량이 청년운동이나 신간회운동에 돌려졌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 후반의 쟁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쟁의는 역시 평북 용천의 불이(不二)농장 쟁의였다.

셋째, 1930년을 전후한 시기 다시 대규모의 소작쟁의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농업공황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생존권 옹호투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이와 더불어 1920년대 후반에 주춤했던 농민조합운동이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었다. 이때는 1920년대 전반기와 달리 특정 지방에 소작쟁의가 집중된 것이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쟁의가 빈발하였다.

넷째, 1933년 이후 식산국 통계에 소작쟁의 발생건수와 인원수가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소작조정령과 조선농지령으로 분쟁조정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었다. 이에 반해 치안관련 쟁의가 상당한 폭으로 줄어든 것은 일제의 탄압으로 합법적인 조직 농민운동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일반적 추이는 전남·순천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전남·순천지역에서 전개된 소작쟁의의 일반적 추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주목된다. 첫째는 1923년과 1924년에 일어난 소작쟁의의 1/3이 전남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순천지역에서 가장 많은 쟁의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1924년 한 해에 전남지역의 쟁의건수는 86건, 검거자수는 344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만 30건(검거자 142명)이었다.<sup>1)</sup> 1920년대 전반기 삼남지방의 소작쟁의는 다음 표에서 확인되듯이 대부분 소작권 이동, 소작료 남징, 지세공과금 소작인 전가, 소작료 두량

#### 소작쟁의의 발생원인

1)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 『조선의 군중』, 1926(김점숙, 「1930년대 전반기 전남지방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89).

구분 연도	소작권 이동	소작권 반환	고율 소작료	소작료 사정	소작료 반환	지세 공과금	소작료 운반	지세 반환	감정 대립	기 타	총 계
1920	1	-	6	1	1	3	1	-	1	2	16
1921	4	-	9	6	1	2	-	-	2	3	27
1922	8	1	5	1	-	2	-	-	1	6	24
1923	117	-	30	6	1	11	2	2	-	7	176
1924	126	-	22	2	2	5	-	-	-	7	164
1925	1	-	5	-	-	-	-	-	1	4	11
1926	4	-	4	6	-	1	-	-	-	2	17
1927	11	-	1	4	1	2	1	-	1	1	22
합 계	272	1	82	26	6	26	4	2	6	32	457

비고 : 위의 집계는 총독부 경무국 집계임.  
출전 : 이여성·김세용 편저, 『數字朝鮮研究』 第4輯, 1933, 93~94쪽.

시의 불법용기 사용 등에 따른 분쟁이었다.

둘째는 1930년대 초반에 다른 지역에서는 소작쟁의가 치열하게 전개되었는데도 전남지역, 특히 순천지역의 경우는 운동이 매우 부진하였다는 점이다. 1930년대에 전남지역에서는 ‘전남노농협의회사건’, ‘전남노농협의회재건사건’, ‘조선공산당재건전남동맹사건’, ‘전남사회운동협의회사건’ 등 큰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그러나 위 사건의 관련자 가운데 순천 출신의 인물은 전남노농협의회사건에 연루되어 3년형을 선고받은 정시환(鄭時煥 : 전문학교 퇴학, 농업) 한 사람뿐이었다.<sup>2)</sup>

2) 김점숙, 위의 논문, 부록 참조.

